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사5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6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촘촘하고 폭 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‘안전한 사회’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며
-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·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여 맞춤형 One-stop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 명칭 변경(안 제3조) : 기획행정국 → 안전행정국
- 나. 부서 신설과 조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안전총괄과 : 안전행정국에 신설 * 재난관리과 폐지
 - 허가민원과 : 경제건설국에 신설
- 다. 분담업무의 조정
 - 안전총괄, 재난, 민방위에 관한 사항 ⇒ 안전행정국으로
 -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국에서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기획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기획행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획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감사과”를 “안전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감사과, 안전총괄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특사경 총괄 업무
10. 풍수해 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
11. 지역 재난방지 종합계획 수립
12. 민방위 업무

제6조제1항 중 “경제건설국에”를 “경제건설국에 허가민원과,”로, “건축디자인과, 재난관리과”를 “건축디자인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1호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첨단산업개발, 온천관련 업무, 재난관리”를 “하천관리, 첨단산업개발, 온천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림행정의 종합기획조정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기획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제2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0호를 “기획행정국장”에서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중 “기획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·국의 설치) 시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<u>기획 행정국</u> , 경제건설국, 문화복지국, 농업정책국을 둔다.	제3조(실·국의 설치) ----- ----- <u>안전 행정국</u> ----- -----.
제5조(<u>기획행정국에 두는 과</u>) ① <u>기획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감사과, 정보통신과, 종합민원실, 세정과, 회계과</u> 를 둔다. ② <u>기획행정국장</u> 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	제5조(<u>안전행정국에 두는 과</u>) ① <u>안전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감사과, 안전총괄과</u> ----- -----. ② <u>안전행정국장</u>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2. (생 략) 13. · 14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특사경 총괄 업무</u> 13. (현행 제9호와 같음) <u>10. 풍수해 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</u> 14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<u>11. 지역 재난방지 종합계획 수립</u> 15. (현행 제11호와 같음) <u>12. 민방위 업무</u> 16. (현행 제12호와 같음) 17. · 18. (현행 제13호와 제14호와 같음)
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	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

현 행	개 정 안
<p><u>경제건설국에</u> 경제과, 기업지원과, 지역개발과, 도로과, 교통과, <u>건축</u> <u>디자인과</u>, 재난관리과를 둔다.</p> <p>②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, 도시개발, <u>첨단산업개발</u>, 온천 관련 업무, 재난관리 업무 3. <u>하천관리 및 풍수해 종합대책</u> 4. ~ 6. (생 략) 7. (생 략) 8. <u>지역 재난방지 종합계획 수립</u> 9. <u>민방위 업무</u> <p>제8조(농업정책국에 두는 과) ① (생 략)</p> <p>② 농업정책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농림행정의 종합기획조정</u>, <u>농지의 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</u> 2. ~ 5. (생 략) 	<p><u>경제건설국에</u> 허가민원과, -- ----- <u>건축</u> <u>디자인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3. ----- -- <u>하천관리</u>, <u>첨단산업개발</u>, 온천 관련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8조(농업정책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농림행정의 종합기획조정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일부개정 2011. 7. 14 법률 제10827호]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>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일부개정 2012. 4. 10 대통령령 23712호]

-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- ② 실·본부[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나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한한다]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
-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
-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
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-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
-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